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

2024. 9. 10(화) 14:00

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

(의회사무국 소관)



의회운영위원회

전문위원

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563호
-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제출일자 : 2024. 8. 22.
- 회부일자 : 2024. 8. 22.

2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45조(추가경정예산)
- 지방재정법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3.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[총괄]

최종예산 : 789,787백만원(일반 759,559백만원, 특별 30,228백만원)

(단위 : 백만원)

구	분	예산액	기 정 액				2회추경 (안)	비고
			소계	당초예산	간주처리	1차추경		
계		789,787	750,512	734,976	14,011	1,525	39,275	
일반회계		759,559	722,526	709,513	11,488	1,525	37,033	
특별회계		30,228	27,986	25,463	2,523	0	2,242	
	의료급여기금	668	585	585	0	0	83	
	주차장	29,560	27,401	24,878	2,523	0	2,159	

4.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

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예산액	기정액	2회추경(안)			비고
				계	증액	감액	
계		4,356,373	4,464,100	△107,727	64,708	△172,435	

○ 기정예산 44억 6,410만원 대비 1억 772만 7천원 감액(2.4%)된 43억 5,637만 3천원임.

세부사업별 현황

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명		최종예산 (①+②)	기정액 (①)	예산(안) (②)
편성목	주요내용			
계		4,356,373	4,464,100	△107,727
열린의회운영		53,711	49,767	3,944
자산취득비	자산및물품취득비(속기기계 구매)	3,944	0	3,944
의회비 지원		875,395	822,419	52,976
의회비	의정활동비(인상분 소급 반영)	180,000	132,000	48,000
	의정운영공통경비(교섭단체 운영)	98,302	93,326	4,976
인력운영비		2,851,250	3,012,597	△161,347
인건비	보수(직원 휴직 및 면직에 따른 기본급, 수당 등)	1,703,989	1,835,444	△131,455
	기타직보수(시간선택제 임기제 면직)	529,599	559,491	△29,892
기본경비		109,192	112,492	△3,300
일반운영비	사무관리비(급량비 인상분)	77,164	69,376	7,788
여비	국내여비(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)	11,088	22,176	△11,088

5. 검토의견

- 의회사무국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,
 - 금년도 속기직 신규 임용에 따른 속기용 키보드를 구매하고자 자산 취득비를 증액하고, 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분 소급 및 교섭단체 운영경비를 반영하고자 의정활동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증액하였으며, 공무원 매식비 집행기준 인상에 따른 급량비를 증액하였으며, 또한, 직원 육아휴직 및 의원 면직으로 인한 잔액 발생으로 인건비를 감액하고,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직원 출장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,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적정하게 예산 편성되었다고 판단됨.

붙임 : 관련 법령 1부.

관계법령

『지방자치법』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② 제1항에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『지방재정법』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591호, 2023. 8. 8., 타법개정]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

[전문개정 2011.8.4.]